일본, 돈육수출국에 항균물질 등 검사증명서 첨부 요구

– 미국 · 대만산 돈육에서 항균물질 다량 검출 –

일본이 외국에서 수입하는 돈육을 비롯한 전 식육에 대해 항균물질 등의 검사증명서 첨부를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리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일본에서 발행된 자료에 따르면, 3월중 일본 검역소에서 검사한 미국과 대만산 수입 돈육에서 설파메타진(Sulfamethazine)이 기준치인 0.05ppm을 훨씬 초과한 0.4ppm, 1.7ppm이나 검출돼, 관계국 담당관들이 긴급회합을 갖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후생성은 지난 2월 15일 검역소에 행정지시를 보내 수입돈육에 대해 항생물질, 합성항균제, 유기염소계 농약의 잔류량을 검사토록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본 검역소는 2월 23일부터 검사에 착수, 미국산 돈육에 대해서는 전 Lot를,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의 돈육은 수입량의 10%를 검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설파메타진의 잔류량이 허용치인 0.05ppm을 초과할때는 폐기 또는 수출국으로 반송하는 한편, 향후 일본에 수입되는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수출국의 잔류량 검사증명서 첨부를 의무화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돈육에 대한 검사를 요구하는 항목은 항생물질과 합성항균제, 홀몬제, 유기염소계 농약이나, 이중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약제는 잔류기간이 긴 설파메타진인 것으로 알려졌다.

설파메타진은 돼지의 호흡기질병 치료제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합성항균제로, 인체에 대한 부작용은 신장기능장애, 청색증, 빈혈 등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에서 검사를 하는 항목은 항생물질의 경우 옥시테트라싸이클린, 크로르싸이크린, 크로람페니콜, 타이로신, 페니실린, 스트렙토마이신 등이 있고, 합성항균제로는 카바독스, 오라퀸독스, 셀파메타진이 포함되어 있다.

일본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설파메타진의 경우 기준치를 0.05ppm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FDA는 0.1ppm을 기준치로 삼고 있다.

한편, 미국은 자국산 돈육에서 0.4ppm의 설파메타진이 검출되자 농무성 담당관을 긴급 일본에 파견, 일본측과 협상을 벌였다. 협상에서 양측은 3월 10일 현재 선적중이거나 도착된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양측의 검사결과가 동일한 것에 한해 수입하고, 3월 11일 이후 수출육은 일본의 허용치 이하의 것에 한해 미농무성이 인정한 기관의 검사증명서를 발행해서 수출토록 하며, 검사증명서 첨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검사를 생략키로 합의했다.

또한 대만은 4개업체에서 수출한 돈육에서 1.7ppm의 설파메타진이 검출되었는데, 이에대해 대만정부는 3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돈육의 일본 수출을 중단키로 발표했다.

한편 본회는 이와같은 점을 감안, 지난 3월 22일 정부관계자, 돈육수출업체·돈육 생산업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돈육수출협의회를 개최, 이 문제를 토의하는 한편, 정부차원에서 설파메타진의 잔류량을 검사하여 증명서를 발급해 줄 것과 공인 검사기관을 지정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

또한 본회는 양돈농가들에 대해 80kg 이후에는 반드시 비육후기 사료를 급여하되, 사료에는 일체의 항생제와 항균제를 첨가하지 말고 또 도살 20일전에도 항생·항균물질의 경구투여와 주사를 금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도 본회는 수출업체에 대해선 규격돈 구매시 항생·항균물질의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수출돈 생산 전문 양돈장의 시중에서의 돼지 구입 금지를 당부했다.

또한 본회는 사료생산업체에 대해선 비육돈 후기사료에 항생·항균물질을 일체 첨가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일본의 항생·항균물질 검사로 돈육수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약제의 잔류량을 검사하는 기계가 1대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기계시설 및 인력의 보강과 국가차원의 검사 공인제도 시행이 시급히 요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일본정부와 접촉, "No Check"로 수출할 수 있는 방안 강구가 요망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배합사료제조용 동물약품 첨가 사용 지침(농림수산부고시 제86-18호, 1986. 6. 27)에 항생물질 및 항균물질의 사용방법과 허용량을 규정해 이들 약제의 사용을 규제해 오고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도살전 7일간에 사용되는 배합사료에는 항균물질을 첨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기간중 사용될 우려가 있는 배합사료에는 도살전 7일간의 휴약기간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출하전 60일간 설파메타진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NPPC에서 결정·시행하고 있다.

배합사료 제조용 동물약품 첨가 사용 지침은 다음과 같다. 〈글 : 김동성〉

배합사료 제조용 동물약품 첨가 사용 지침

(농림수산부 고시 제86-18호, 1986. 6. 27)

항생물질 및 항균물질의 사용방법 및 허용량

대상배합사료 / 품명	돼지			
	어린돼지용	육성돈용	비육돈용	
	(8주이전)	(2~4개월)	전기	후기
테스토마이신	5~10	5~10	-	-
린코마이신	44	44	44	-
바시트라신메칠렌 디살리실레이트	11~33	11~33	11~33	
밤버마이신	5~20	1~10	1~10	-
버지니아마이신	5~25	10~20	10~20	-
스펙티노마이신	5.5~22	5.5~22	5.5~22	-
스피라마이신	5~100	5~50	5~20	-
아보파신	10	5~20	5~20	-
아연바실트라신	10~100	4~40	4~40	-
에리스로마이신	10~70	10	10	-
엘라마이신	2.5~20	2.5~20	-	-
염산옥시테트라싸이클린	5~100	10~50	10~50	-
염산클로르테트라싸이클린	10~100	10~50	10~50	-
옥시테트라싸이클린 4급암모늄	5~100	10~50	10~50	-
치오펩틴	2~10	2~10	-	-
카타사마이신	5.6~100	-	-	-
타이로신	22~110	22~44	22~44	~-
티아무린	10~40	10~40	10~40	-

주) 첨가량은 배합사료 1M/T 당 첨가하는 유효성분 g 임.

대상배합사료 / 품명	돼지		지	
	어린돼지용	육성돈용	비육돈용	
	(8주이하)	(2~4개월)	전기	후기
페니실린	10~50	10~50	-	-
하이그로마이신B	6~12	6~12	6~12	-
황산네오마이신	10~100	-	-	-
황산콜리스틴	2~40	2~40	-	-
니트로빈	10~25	5~15	5~15	-
로니다롤	60	60	-	-
모란텔시트레이트	30	30	-	-
설파메타진	100	-	-	-
설파치아졸	100	-	-	-
오라퀸독소	15~50	15~50	-	-
카바독스	25~50	25~50	-	-
푸라졸리돈	165	165	165	-